

※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(2022.3월)

□ **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**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 지역을 제외한 **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**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자

□ **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**

-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 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고려대(세종), 동국대(경주), 연세대(원주)

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○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※ **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지 여부는 해당학교 행정실 또는 '대학알리미' 사이트 상의 학교 정보조회를 통해 직접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-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 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

□ 그 외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